##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18

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 전에는 「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」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 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폐기물처분부담금) ① ~	제36조(폐기물처분부담금) ① ~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
	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
	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